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2
----------	------

발의연월일 : 2017. 8. 25.

발의자 : 정운천 · 곽대훈 · 조배숙  
이용호 · 정동영 · 김관영  
김종회 · 김광수 · 안호영  
이춘석 · 성일종 · 주호영  
정양석 · 김세연 · 강길부  
정병국 · 박덕흠 · 김병관  
유성엽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이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u></p> <p><u>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p> <p><u>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u></li> <li><u>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u></li> <li><u>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등의 추진</u></li> <li><u>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li> <li><u>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u></li> </ul>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  
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  
적 달성을 위한 경비를 조달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